

안산시의회 안산시 재)에버그린 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09. 7.

안산시의회 안산시 재)에버그린 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I. 특별위원회 활동개요 -----	4
II. 그간 활동사항 -----	7
III. 조사결과 -----	16
IV. 향후 발전 방안(권고사항) -----	21
※ 첨부자료 -----	23

I.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1. 조사 목적

- 안산시 재)에버그린 21 환경재단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금년도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예산내역 및 조직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 조사대상 : 안산시(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 재)에버그린 21
- 조사사무의 범위
 - 재단 운영실태 전반
 - 예산내역 및 집행 현황, 관련자 책임 규명 등

3.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 : 7명
 - 기획행정위원회 : 송세현, 홍연아
 - 경제사회위원회 : 이기환, 이민근, 박선희
 - 도시건설위원회 : 김동규, 성준모
- 조사보조자 : 4명
 - 전문위원 : 박경열, 박소운
 - 사무직원 : 신문호
 - 속기사 : 이향례

4. 조사기간 : 2009. 4. 16 ~ 2009. 6. 30

5. 증인 및 참고인 채택

○ 증인 : 총 9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재)안산시 에버그린 21	대표이사 본부장 전략사업부 부장 환경인증사업부 부서장 지구환경사업부 부장	정홍재 이두철 안준식 김철현 김대희	
안산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지구환경과장 단원구 초지동장	임철웅 정내관 박강호	전)업무과장
-	-	최원영	(재)에버그린 21 퇴직자

○ 참고인 채택 : 4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재)안산시 에버그린 21	환경인증사업부 차장 환경인증사업부 차장 지구환경사업부 대리 지구환경사업부 주임	김대식 서경애 신진옥 김희영	

6.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목록

구 분	목록내용	비고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 지구환경과와 수발신된 문서 일체 (전자문서, 이메일 등 첨부서류 포함) ○ 일반현황, 인원 및 업무분장 내역(설립 이후부터 변동 사항 포함) ○ 2008년, 2009년 예산집행내역(인건비, 업무 추진비, 경상비, 사업비) ○ 정관, 규정 및 개정 현황(개정배경, 개정전후 변동사항 포함) ○ 재)안산시 에버그린 21 설립계획서 ○ 재단설립당시 대표이사 본부장 직원 채용 서류 일체 (공고문, 이력서, 접수서류 일체, 정규직(계약직) 채용 계약서 등) ○ 이사명단 및 설립이후 이사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 사업별 계획서(2008년, 2009년) ○ 2008년도 결산내역(결산서류 일체) ○ 수익사업 현황 ○ 인건비 산정기준(상여금, 성과급 포함) ○ 2008년 직원 인건비 및 09년 재계약시 인건비 ○ 재원 조성 현황 ○ 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배경 및 인사이동 현황(직책) ○ 직원 징계, 퇴출 현황 및 사유 ○ 물품 및 사업계약 관련 일체자료(계약서, 계약방법, 비용 산출 근거) ○ 재)안산시 에버그린 21 실적 및 성과 내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5.21일 기준 재단 에버그린 21조직도 및 직원현황 (계약직, 상용직, 비정규직 포함) ○ 사무분장내역 ○ 재단설립이후 인건비 지출내역(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 비등 급여 일체) ○ 2008, 2009년도 세출예산 평성내역 ○ 500만원이상 사업예산 집행내역 ○ 2009년도 직원채용 현황 ○ 2008년도 사업추진현황(예산, 시민참여현황 등) ○ 2008, 2009년 예산 전용 현황 	

구 분	목록내용	비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 시간회 근무수당 재단 지급근거 및 지방공무원 직급별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 지방공무원 파견 관련문서 ○ 2008년도 세출예산서 수정본 원본 ○ 재단설립시 기구구입내역 ○ 2008년도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 	

II. 그간 활동사항

1. 제1차 회의(2009.4.7)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위원장 : 송세현
- 간 사 : 홍연아

2. 제2차 회의(2009.4.13) : 재)에버그린 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의결

3. 제3차 회의(2009.4.15) : 재)에버그린 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수정

- 재단 이사장 및 재)에버그린 21 평직원 증인에서 제외

4. 간담회 개최(2009.5.6) : 자치개혁시민연대와의 간담회 개최

- 재)에버그린 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의견 수렴

5. 제4차 회의(2009.5.8) : 재)에버그린 21 행정사무조사 구체적 실시방향 논의

-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및 조사방향 논의, 참고인 추가 채택

6. 제5차 회의(2009.5.21) : 증인 신문

- 증인 : 재)에버그린 21 대표이사 정홍재, 본부장 이두철, 전략사업부 안준식, 환경인증사업부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 김대희, 주민 생활지원국장, 지구환경과장, 초지동장, 참고인 4명

- 주요 신문 내용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김동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근거 없음. ○ 조직개편, 직제개편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는데 절차를 이행했는지 ○ 직원의 신원조사 회보서(음주운전, 명예훼손 등) 확인 여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후생복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 정관 제정 및 변경시에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임용함.
성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예산의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 수령 여부 ○ 국도비 지원 요청 및 수령여부 ○ 파견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 ○ 2008. 7. 14일 채용된 계약직 두명의 특별채용 근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100% 출연하는 기관은 기부금 품을 받을 수 없음. ○ 출연요구는 하였으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받아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음. ○ 회계과와 협의 후 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함. ○ 규정에 특별채용 근거가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이기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인증제 참여 가정수는 ○ 재단 출범한 지 오래지 않아 생태 도시 협약식에 1억원을 사용한 효과는 ○ 결음아 나살려라 만병통치 행사시 상품으로 게임기 등 탄소가 배출되는 경품을 선정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은 1만 5천 가정이고 인증받은 가정이 3,818가정이며, 절약한 금액이 151만kw로 약 2억 2,500만원임. ○ 한빛방송에서 5개월간 홍보해 주었고, 토론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 ○ 앞으로 친환경 경품 선정 등 개선하겠음.
박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제14조 채용연령 제한이 변경된 이유는 ○ 직원 공개 모집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이유 ○ 대표이사 채용시 서류심사 채점표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심사기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에서 일정한 직위 이상 연령제한은 위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초 채용시 6명의 직원을 일반직으로 채용했으나 이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조직 내 화합이 안돼서 일반직 직원 3명은 동의를 받아 계약직으로 전환함. ○ 확인해 보겠음.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홍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전환 및 인사이동 현황 관련한 배경 ○ 규정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면 경직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일정기간 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정원의 범위안에서 계약직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음.

7. 제6차 회의(2009.5.22) : 증인 신문

- 참석자 : 최원영(전 에버그린 21 직원)
- 주요 신문내용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김동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중기계획이나 연간계획에 없이 실행된 예산 집행여부 ○ 사무기기 구입시 회계절차 준수 여부 ○ 경일고등학교가 재단행사에서 수상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스타디움에서 있었던 행사에 1억원을 출연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던 것을 엠넷 실무자와 진행한 후 계약서 검토만 맡겼으며, 세금계산서만 보내고 출연금에 따른 홍보효과나 목적 달성여부 등 검증이 없었음. ○ 본부장이 선정한 퍼시스 가구에서 사무기기가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출만 하였음. ○ 본부장 지시가 있었다고 신진옥 대리가 토로한 적이 있음.
성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4일 계약직 2명 특별채용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가 출근하기 전에 비서와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력서를 보내왔으며, 꼭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이기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사업부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한 사항은 ○ 건기대회 행사시 증인의 역할과 사업의 효과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에 자유롭고, 재단의 합목적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영국대사관과 MOU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안산을 읍저버로 등록시키고자 전의했으나 관리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함. ○ 역할은 없었고, 탄소 저감에 대한 공유 보다 이벤트성 행사가 된 느낌임.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이민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버그린의 일련의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 조직내 특정인과 관련된 직원이 있는가 ○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의견은 ○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은 환경인증사업부로 직제 편성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 있다. 본부장, 서경애, 김부영 ○ 아쉬움이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곤란함. ○ 모두 환경인증사업부로 변경함.
홍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전환 동의서 작성 사실 및 내용은 ? ○ 올 2월에 채용한 직원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 상용직 직원 채용시기 및 정원에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동의서에 서명은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고지하였음. ○ 별도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심사 ○ 8월 초순경이며, 정원에 포함됨.

8. 제7차 회의(2009.5.25) : 개회 후 산회

9. 제8차 회의(2009.6.1) : 증인 및 참고인 진술

- 증인 : 정홍재 대표이사, 이두철 본부장, 전략사업부 안준식, 환경인증 사업부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 김대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 참고인 : 김대식, 서경애, 신진옥, 김희영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성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채점표를 보고 지적이 없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장님이 지적을 하셨으며, 한분만 용서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였고 용서자가 재단에 맞는 인물인가를 판단하였음.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김동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표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 최원영씨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 1,500만원이 신문사에 홍보비로 지출되었음. ○ 경위서 작성시 사용처 인지여부 및 경위서 작성 지시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 이사회와 인사위원도 계시므로 공문을 받은 후 결정하겠음. ○ 신문사와 협의해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출을 결정함. ○ 알지 못하였으면 조직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함.
박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감정, 신상에 대한 문제도 조직내에서 감싸 안아야 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직이 일정기간 긴장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관리적인 판단을 하였음.
이기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버그린 21 전 직원들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대표이사 출퇴근을 지원했고, 탄소줄이기 행사에 탄소 발생 경품을 주는 등 노력이 부족함 ○ 최원영 중인의 징계사유가 복종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복종위반이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기사를 대동하고 출퇴근을 했으나 2월부터는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음. 경품 선정은 생각이 부족했음. ○ 업무능력부족과 소양부족임. 무단조퇴, 무단결근, 직무명령 불이행 등 여러가지임.
홍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직 직원 채용은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위배됨 ○ 2008년 처음 전략사업부 나급 직원 서류전형 심사기준표가 경력 60점, 학력 20점, 연령 20점인데, 올해 전략사업부 나급 채용을 할 때에는 채용기준이 경력 80점, 학력 10점, 연령 10점으로 변경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하다면 임시직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을 하다보니까, 학력이나 연령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변경함.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이민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이사 채점표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1명이라는 이유로 무관심했던 주무과의 책임 여부 ○ 2009.2.10일자로 파견 공무원을 전략사업부장으로 임명한 이유 ○ 탄소사냥대회 최종 수상단체 선정 과정에서 본부장 지시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의미는 ○ 퇴직 교감에게 월 100만원 가량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라고 지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점은 인정함. ○ 인사담당 부장인 최원영이 계약직 전환 규정 개정 등 업무를 안하길래 안준식에게 시키게 된 것임. ○ 환경인증제는 학생들을 통한 홍보가 이상적인데 3개 학교가 500명 이상씩 가입했는데도 시상권내 들지 못해 3개학교 모두에게 특별상을 준 것이지 순위를 바꾼 것은 아님. ○ 퇴직하면 재단일 좀 도와 달라 하면서 어떻게 강사수당이라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전 전략사업부장하고 논의하다 만 사항일 뿐이며 계획에 반영된 사항도 아님.

10. 제9차 회의(2009.6.2) :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증인 : 정홍재 대표이사, 이두철 본부장, 전략사업부 안준식, 환경인증 사업부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 김대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 전략사업부장 최원영
- 참고인 : 김대식, 서경애, 신진옥, 김희영
- 주요신문 내용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성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들은 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직원들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과는 없으나 지인이나 가족들과 상의한 적은 있음.(김희영, 신진옥)
홍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참고인의 경우 업무분장이 되었는데 사전 협의 여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재단에 계속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김희영)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이기환	<input type="radio"/>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input type="radio"/> 참고인 상임이사 채점표를 본 적이 있는가	<input type="radio"/> 없음.(참고인 전원) <input type="radio"/> 본 기억이 없음. (참고인 전원)
이민근	<input type="radio"/>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기 보다는 피해를 입은 듯한 부분은 없는지	<input type="radio"/> 없음.(참고인 전원)
성준모	<input type="radio"/> 특별채용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 <input type="radio"/> 규정의 정규직 티오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유 <input type="radio"/> 2008년 사업비 잔액(5억3천여만원) 처리 방법은	<input type="radio"/> 계약직 권리 규정에 의해 채용했으며, 계약직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음. <input type="radio"/> 정규직 티오 내에서는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input type="radio"/> 시에서 불용처리 할 계획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태임.
박선희	<input type="radio"/> 전 최원영 부장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풀어서 출력해온 자료에는 6월25일 오전 11시 55분에 수정한 것으로 나와 있음. 최원영 증인은 당일 출근했는지	<input type="radio"/> 이를간 밤을 새우고 출근했으며, 본부장 출근 후 쉬러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함. (최원영)
이민근	<input type="radio"/> 언론사 관련하여 특정한 곳만 접근 한 이유는	<input type="radio"/>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음.
김동규	<input type="radio"/> 환경생태도시 안산 선언 축하공연을 위한 추진회의에 공보실, 지구 환경과, 한빛방송 세 곳이 모여 회의를 하였고, 이사장 지시로 1억원의 예산을 재단이 부담하게 되었음.	<input type="radio"/> 시청에서 최초 회의는 하였으나 선언식만 하면 의미가 없고, 공연을 겹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전국 최초로 설립된 에버그린 21에서 주관하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였음.
홍연아	<input type="radio"/> 예산변경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았는지	<input type="radio"/> 총액이 늘어난 경우에만 승인을 받고 총액내에서 부기만 변경될 경우에는 이사장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기환	<input type="radio"/> 생태도시 선언식 관련해서 재단 행사를 논의하는데 재단에서 참석을 하지 않고 시장이 참석하여 결정한 것은 재단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input type="radio"/> 행사 비중이 재단이 더 크고, 생태도시 선언식은 잠시였음.

11. 제10차 회의(2009.6.3) :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증인 : 정홍재 대표이사, 이두철 본부장, 전략사업부 안준식, 환경인증

사업부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 김대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 전략사업부장 최원영

○ 참고인 : 김대식, 서경애, 신진옥, 김희영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성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버그리너 양성 결과 및 역할은 ○ 재단에서 환경부에 지원 요청한 내역은 ○ 2008.5.1 최초 직원 모집시 홍찬의씨가 입사서류를 냈는데 왜 채점표가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40명, 금년 상반기 30명 수료예정이며, 환경지킴이로서 가정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역할을 담당함. ○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인증제 용역비 5,000만원과 그린스타트 관련 체험학습비로 2,000만원 지원 받음. ○ 개인사정을 말하고 서류를 돌려 달라 해서 실수로 돌려준 사실이 있음.
김동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11일자 직원 채용 기준이 2008년도와 다른 이유와 2년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10점의 가산점을 준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를 하면서 공감한 사항으로 경력직이라는 부분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업무 경력에 비중을 높였음.
이기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운전직급으로 입사한 마급 직원이 4월 27일 서류전형 심사를 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 상 인사위원회,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차로 서류집계를 하고 인사담당부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였음.
이민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분야 나급으로 채용한 서경애의 조교경력을 2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자로 볼 수 있는지 ○ 가상 시나리오에 지구환경사업부 나급의 응시자가 1명에 불과하고 60점 이하를 받아 탈락되어 부득이 금회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계에 물었더니 해당분야 자격에 특별하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적용한다고 들었음. ○ 당일 인사위원회 하고 면접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어 놓은 것 중 하나일 것임.

의원명	신문내용(요약)	답변내용(요약)
박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비가 2,12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대부분 홍보성 기사였음. 홍보성 기사에도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광고비 지급 기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집기사, 기획기사 같은 것은 홍보비를 지출함. ○ 없음. 기사가 1면에 나오느냐 2면에 나오느냐에 따라 다름.
홍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 사업부 나급 서류전형 채점 기준은 경력 20년이상 40점, 15년에서 20년 35점, 10이상 15년미만 30점인데 10년이 안되면 몇 점인지, 조교 경력 2년이면 몇 점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해 보겠음. 기억이 나지 않음.

12. 제11차 회의(2009.6.17) : 회기 연장의 건(부결)

13. 제12차 회의(2009.6.19)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 주요 언론보도내용】

- 2009. 5. 28 반월신문
 - '안산시에서 출자한 에버그린 대표 심사채점표 예당 채용서류 복사판 논란'
 - 안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적절한 인사채용 있었다" 증언
 - 인사가 만사다
- 2009. 5. 28 안산저널 : "부적절한 인사·자금운영 있었다"
- 2009. 6. 1 안산정론신문 : 에버그린 21 '허점투성이' /에버그린 21 상임이사 선출 '코미디'
- 2009. 6. 3 안산신문 : 에버그린 21 '짜맞추기 채용' 논란/환경재단 환골탈퇴해야 한다
- 2009. 6. 4 반월신문 : 잘못된 서류로 채용된 "임원" 해임 요구/ 중인vs특위위원 '신경전'
- 2009. 6. 4 안산시민신문 : 재단 퇴직 직원 '한풀이 특위' 지적
- 2009. 6. 4 안산타임즈 : 폭로전으로 변질된 시의회 '특위활동'
- 2009. 6. 10 안산신문 : 에버그린 21, 책임자 문책 불가피

III. 조사결과

1. 인사부문

○ 문화예술에 대한 의견 등을 평가하여 환경재단 상임이사 선출

상임이사 채용 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임원 채점표와 동일한 채점표에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채점 및 확인 서명, 이를 근거로 상임이사를 채용함으로써 재단과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채용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첨부자료 1> 상임이사 서류전형 채점표

○ 근거 없는 시장 비서의 가족과 후배 계약직 특별채용

당시 규정상 본부장 제외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직제 및 정원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특채는 특별한 경우(경력 및 시급성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아는 교수 및 교감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함.

재단 출범식(2008. 7. 25) 준비를 위해 직원의 긴급 충원이 불가피했다고 하나, 임시직을 우선 채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했음.

뿐만아니라 채용자 1명은 차량 운전 등 차량이 상임이사의 출퇴근에 주로 사용된 점과 또한 학교와의 협조를 위해 채용했다는 직원은 학교 행정실 하위직 근무 1년여의 경력이 학교와의 사업 협조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기 어려움을 볼 때, 특채의 정당성은 없음.

첨부자료 2> 직제 및 정원기준 - 정원표

○ 정규직 직원의 부당한 계약직 전환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임은 물론 외부에서의 재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여짐. 또한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타부서 발령 역시 부당한 인사행위임.

○ 규정에 없는 상용직원 채용 및 채용 계약서 미체결

역시 아는 교감의 추천으로 채용했다는 상용직원의 경우 직제 및 정원규정 등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단 측이 주장하는 임시직에 대한 규정은 상용직과 분명히 구분됨. 또한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법에서 반드시 체결토록 되어 있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인사의 전형을 보여줌.

○ 특정인을 채용, 임용하기 위한 맞춤형 채용 및 심사기준, 규정 개정

- 2008. 5월 지구환경사업부 나급의 경우 : 인사규정 13조에 의하면 나급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동등 자격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용공고 시 ‘석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자’라는 내용을 추가 하여 공고하고, 조교 경력 2년인 응시자를 채용함.
- 또한 2008. 5월 직원 공개모집에 응시한 홍○○의 제출 서류를 당시 지구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던 김○○가 돌려줌으로써 공고문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음.
- 2009. 1월 환경인증사업부 나급의 경우 :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 시 ‘7급 이상 5년’이라는 단서를 달아 공고하고, 안산시에서 계약직 공무원 7급으로 근무한 응시자를 채용함.

- 2009. 2월 전략사업부장 임용의 경우 : 직제 및 정원규정 8조에 부서장의 직급은 나급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나.다급 또는 이에 준하는 파견공무원 중에서 보한다’로 2. 9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2. 10 시에서 파견한 7급 공무원을 전략사업부장으로 임명함.
- 2009년 5월 전략사업부 나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자’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신설하고, 학력과 전공 점수를 하향 조정, 경력점수를 80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2년여 근무한 응시자를 채용함.

첨부서류3> 각 채용공고, 최초 및 변경 심사기준표

○ 채점 오류로 부적절한 채용

2008. 5월, 지구환경사업부 나급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경력사항(조교 2년)에 대한 점수가 0점이어야 함에도 30점을 부여하고, 무리하게 지구환경사업부 부장으로 채용함.

첨부서류4> 2008년 5월 지구환경사업부 나급 서류전형 심사기준표

2. 예산집행 부문

○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가구 구입

재단 설립 전 시에서 관내 업체에 구두로 발주한 후 재단 직원 채용 후 계약 · 지출토록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입찰 또는 타 견적서 첨부 등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구입단가를 책정함.

첨부서류5> 견적서

○ 회계규정 위반

걷기대회 행사시 기념품(모자, 티셔츠)을 타견적서 첨부도 없이, 사업 경험도 없는 특정업체에서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납품 받은 사실이 있음.

첨부서류6> 견적서

○ 환경재단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경품 지급

걷기 대회 경품으로 P2(게임기), 믹서기 등 CO₂를 배출시켜 환경재단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물품을 선정, 지급함.

○ 규정을 위배한 2008년도 예산안 및 사업비 미지출

2008년 예산안의 경우 6월 25일 설립 이사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항, 목 없이 환경인증사업비 등 628,279천원과 출범식 30,000천원으로만 되어 있고, 이후에 사업예산을 세웠음에도 필수 사항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함.

또한 사업예산의 약 50%를 미지출하여 사업 진행 정도 자체가 매우 미흡함.

○ 부적절한 광고비 지급

광고비 지출 시 기준과 근거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없이 광고가 아닌 기사 및 보도자료에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음.

○ 불용액 미반환

2008년 총 예산 중 524,47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09. 6월 현재까지 반납처리하지 않고 재단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3. 기타사항

○ 부당한 징계

전 전략사업부장을 해고하면서 일부직원들로부터 당사자들은 사용용도도 모르는 경위서를 제출 받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인사규정51조 2항에 의하면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들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림.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복직 판정) 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단 내 직원간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하고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시킴.

○ 사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즉흥적 시행

‘생태도시 안산 선언식’은 당초 재단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재단 내 사전 검토 없이 시장의 지시만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음.

○ 이사회 의결없이 규정 임의 개정

행정사무조사자료 3-2 704쪽 복무규정 54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최초 규정집 47쪽 복무규정 54조 ‘환경개선 및 보전을 도모하며’

얼마나 준비 없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것을 베껴서 재단을 출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이후 이사회에서의 규정 개정 기록이 없음에도 변경되어 있음.

IV. 향후 발전방안(권고사항)

- 안산시의회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 정실인사,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 부재 등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근본적인 인적쇄신과 전환이 없고서는 환경재단의 존속 이유를 찾을 수 없음에 의견 일치하였음.
- 이에 환경재단 원래의 유의미성을 살리고자 최소한 실행되어야 할 다음의 사항을 권고함.
 - 정홍재 대표이사 해임
 - 이두철 본부장 해임
 - 파견공무원(안준식) 복귀
 -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만료 후 문제가 되었던 직원은 재계약 지양
 - 행정직(6급이상) 파견
 - 2008년 불용액 약 5억2천만원 조기 반납
 - 모집공고 규정을 위반하고 응시서류를 돌려준 전 지구환경과 직원 김대희 징계
 - 2008년 안산시 재)에버그린 21 예산집행내역 감사 실시
 - 초기 재단 설립 시 지도·관리 부실한 지구환경과 책임 규명
 - 부장급 이상 임원 및 직원 환경전문가 채용
 - 지구환경과,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에버그린21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에버그린 21 TF팀 구성 및 에버그린 21의 비전과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
- 일반시민,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며,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교육 실시